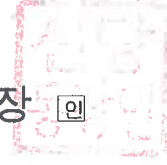
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9월 06일

신당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*	김** 1968-10-09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라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3-09-06